의안 번호	1787	울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6. 30.(수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6. 30.(수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7. 9.(금)

2. 제안이유

가.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경우 그 절차 및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

나. 일본어식 표현 등을 정비하는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 :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

→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·규칙 공포 조례

나.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규정 (안 제3조)

다. 조례 또는 규칙 공포 방법 규정 (안 제6조)

4. 근거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29조 ~ 제32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중구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경우 그 절차,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법

제29조(조례와 규칙의 공포 절차)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(前文)을 붙여야 한다. <개정 2019. 3. 12.>

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·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.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.

③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,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.

제30조(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) ① 법 제26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하되,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31조(공포일) 제30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·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.

제32조(운영 규정)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